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-80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재능장학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학사업 대상 확대 (안 제6조제1항제4호)

- 재능장학생의 범위를 기존 초등학생에서 초·중·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단기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장학생의 재능 발전과정을 확인하여 지역 인재로 육성

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문구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7. 8. 3. ~ 8. 2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 9. 5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초등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”을 “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”으로 한다.

제8조 후단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4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<u>그밖</u> 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<u>그 밖</u> ----- ----- -----.
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,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. 1. ~ 3. (생략) 4. 예술·체육· <u>그 밖</u> 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<u>초등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</u> ② (생략)	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 <u>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자료제공)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<u>없는 한</u> 이	제8조(자료제공)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 <u>없으면</u> -----

에 응하여야 하며,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9조(지도감독) ① ~ ③ (생략)

④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-----.

제19조(지도감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없으면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